

【 6 】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출자 : 양주시장

□ 개정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

□ 주요골자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 장 직위·성명	총 무 과 장 길 홍	총 무 과 장 길 장 찬
	당 직위·성명	총 백 운 운	총 팀 장 찬
	당 직위·성명	김 란 희 (행정 216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u>친절·공정</u>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5조 (친절·공정) ① ----- 친절</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현행)

제정 2003. 10. 19	조례 제20호
개정 2004. 3. 11	조례 제155호
개정 2004. 7. 1	조례 제165호
개정 2005. 6. 13	조례 제205호
개정 2005. 12. 7	조례 제221호
개정 2006. 11. 20	조례 제279호
개정 2006. 12. 28	조례 제2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3>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업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7. 1]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겸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

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 1회당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 3. 11>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5. 6. 13>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3>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3>

제12조(복장)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 6. 13>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등)<개정 2006. 12. 28>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중 원격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8>

[전문개정 2005. 12. 7]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7>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7>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2. 7]

제17조 삭제 <2005. 12. 7>

제3장 휴 가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1>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5. 6. 13. 2006. 12. 2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

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5. 6. 13>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7>

제21조 삭제 <2004. 3. 11>

제2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위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철사한다. <개정 2005. 6. 13>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3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위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6. 1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전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동원치료 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4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되는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하는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때 <신설 2004. 3. 11>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및 양주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는 때 <개정 2005. 6. 13, 2006. 11. 20>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때 <개정 2005. 6. 13>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9.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에 참가할 때 <신설 2006. 12. 28>

제25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삭제 2006. 11. 20>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 6. 13>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 12. 28>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6. 12. 28>

⑧시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 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6. 12. 28>

⑨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

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6. 12. 28>

⑩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7>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7>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자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5. 6. 13]

제29조의2(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정치운동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05. 6. 13]

제30조의2(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접희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6. 13>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의 휴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3. 11 조례 제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4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2004. 7. 1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3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7 조례 제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 제25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1. 20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8 조례 제2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근속휴가를 5일미만 사용한 공무원은 5일에 대한 잔여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5. 6. 13>

선 서 문(제2조 관련)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공직과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 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 관련)

<대 민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대 내 관 계>

- 시간을 염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돋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개정 2004. 7. 1, 2005. 12. 7, 2006. 11. 20, 2006. 12. 2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출 산	배우자	3
입 양	본인	14
사 당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